

부산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453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4532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3347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지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창영, 송한사, 임예현

변론종결 2024. 8. 30.

판결선고 2024. 10. 2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33475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515,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7행 '선고되었다' 뒤에 "(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면 제9행 '변제공탁하였다' 뒤에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2면 제13행 '판결이 선고되고' 뒤에 "(이하 '관련 제2심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면 제15행의 '피고는 2023. 6. 16. 이 사건 공탁금 4,092,660,681원 전액을 수령해갔다.'를 '피고의 집행채권자 부산진구청은 2020. 11. 17.과 2020. 11. 30.에 이 사건 공탁금에서 각 282,800,000원 및 4,766,690원을 추심하여 출급하였고, 피고는 관련 제2심판결 확정 후인 2023. 6. 16. 남은 공탁금 3,805,093,991원 전액을 출급하였다.'로 고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관련 제1심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시인 2018. 8. 10.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판결금에 관하여 더 이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관련 제2심판결에서 판결금이 감액되었으므로 피고가 관련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수령한 이 사건 공탁 금액 중 관련 제2심판결 판결금과의 차액은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탁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으로서 가집급의 효력을 갖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2023. 6. 16.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탁금의 액수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한 공탁으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참조)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금원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관련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공탁한 금원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공탁한 2018. 8. 10.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2023. 6. 16.을 기준으로1) 비로소 가지급에 의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연이자 수령을 목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 제2심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3,212,586,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2020. 11. 17.과 2020. 11. 30. 피고의 집행채권자 부산진구청이 이 사건 공탁금에서 각 282,800,000원 및 4,766,690원을 추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추심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충당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2023. 6. 16.을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관련 제2심판결에 따른 판결금 원리금은 총 5,052,780,636원이 되고, 피고의 2023. 6. 16.자 공탁물 출급으로 변제충당 뒤 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원리금은 1,247,686,645원과 이에 대한 2023.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2023. 6. 16.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이후로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 원리금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전부를 출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정성호, 판사 박우중

별지

1)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관련 제2심판결이 확정된 무렵이기도 하다.